제264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6월 17일 수석전문위원 이 한 진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19 - 32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19년 6월 3일

라.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 2. 제안이유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운영사업

○ 위탁기간: 5년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위탁예산: 247,824천원 (시50 : 구50)
- 나. 위탁체 선정
  -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4. 참고사항

- 장애인복지법제2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장애인·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의 확대운영 추진에 따라,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을 공개 모집, 운영 위탁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서울시 자치구 중 강서구가 등록 장애인이 가장 많음에도 셔틀버스가 부족하여 관내 장애인의 이동 생활의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붙임 1 참조),

- 이를 해소하고자 무료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할 경우, 직영 운영했을 때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노약자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 다만, 적정한 위탁체 선정, 노선 정비 등 철저한 준비와 지도·감독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붙임 1. 자치구별 장애인 셔틀버스 현황 1부.
  - 2. 관계법령 1부.

## **붙임1** 자치구별 장애인 셔틀버스 현황 (2018년 12월 기준)

연번	자치구명	등록 장애인수 (명)	차량대수 (대)	일일운행횟수 (회)
1	강서구	28,910	1	2
2	노원구	27,431	2	10
3	은평구	21,612	2	10
4	송파구	20,280	-	-
5	중랑구	20,268	2	7
6	관악구	20,199	1	2
7	구로구	17,735	-	-
8	성북구	17,542	2	4
9	강북구	17,483	1	4
10	양천구	17,402	-	-
11	강동구	17,374	-	-
12	동대문구	15,776	2	8
13	도봉구	15,324	2	8
14	강남구	15,303	2	7
15	동작구	14,689	-	-
16	영등포구	14,441	1	4
17	마포구	13,162	1	5
18	서대문구	12,687	2	10
19	광진구	12,602	1	5
20	성동구	11,793	2	6
21	금천구	11,209	1	3
22	서초구	10,558	-	-
23	용산구	8,058	-	-
24	종로구	6,049	2	6
25	중구	5,675	1	5

## 붙임2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

###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 ② 지원대상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등으로 한다.
- ③ 운행노선은 강서구 관내 복지관, 동 주민센터 및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 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
-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 위임기관이 승인한 사업은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